

의안번호	제330호
의결 연월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6년 1월 15일

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. 1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교육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며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제명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”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”로 변경함

나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(안 제2조)

1) 지방공무원 총수: 3,150명 → 3,133명(△17명)

다.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(안 제2조, 별표3)

1)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총정원: 2,914명 → 2,896명(△18명)

2)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총정원: 236명 → 237명(+1명)

라.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보임직급에 맞게 직급 조정(안 별표3): 3·4급(△4) → 3급(+4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2) 입법예고(2015. 12. 24. ~ 2016. 1. 13.): 결과 별첨

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,150명”을 “3,13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,914명”을 “2,896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236명”을 “23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**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**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<b>총계</b>	<b>3,133</b>	-	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<b>1</b>		
교육감	1	1		
<b>일반직 계</b>	<b>2,880</b>	-		
3급	5	5		
4급	19	18	1	
5급 이하 소계	2,843	-		
전문경력관 소계	13	-		
<b>연구직 계</b>	<b>12</b>	-		
연구사 소계	12	-		
<b>교육전문직원 계</b>	<b>237</b>	-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4	23	11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3	-		
<b>별정직 계</b>	<b>3</b>	-		
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</b> 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b>3,150명</b>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b>2,914명</b>(제 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</p> <p>3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 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: <b>236명</b></p> <p>[별표 3] <b>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총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본청 (직속기관 포함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계</b></td> <td><b>3,150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<b>정무직 계</b></td> <td><b>1</b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 계</b></td> <td><b>2,898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3·4급</b></td> <td><b>4</b>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19</td> <td>18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<b>2,861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3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<b>연구직 계</b></td> <td><b>12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 소계</td> <td>12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<b>교육전문직원 계</b></td> <td><b>236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 <td>34</td> <td>23</td> <td>1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<b>202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<b>별정직 계</b></td> <td><b>3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 이하 소계</td> <td>3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<b>총계</b>	<b>3,150</b>	-			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1			교육감	1	1			<b>일반직 계</b>	<b>2,898</b>	-			3급	1	1			<b>3·4급</b>	<b>4</b>	4			4급	19	18	1		5급 이하 소계	<b>2,861</b>	-			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<b>연구직 계</b>	<b>12</b>	-			연구사 소계	12	-			<b>교육전문직원 계</b>	<b>236</b>	-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4	23	11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<b>202</b>	-			<b>별정직 계</b>	<b>3</b>	-			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	<p><b>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</b> 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b>3,133명</b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b>2,896명</b>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 <b>237명</b>-----</p> <p>[별표 3] <b>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총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본청 (직속기관 포함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계</b></td> <td><b>3,133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<b>정무직 계</b></td> <td><b>1</b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 계</b></td> <td><b>2,880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19</td> <td>18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<b>2,843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3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<b>연구직 계</b></td> <td><b>12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 소계</td> <td>12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<b>교육전문직원 계</b></td> <td><b>237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 <td>34</td> <td>23</td> <td>1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<b>203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<b>별정직 계</b></td> <td><b>3</b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 이하 소계</td> <td>3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<b>총계</b>	<b>3,133</b>	-			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1			교육감	1	1			<b>일반직 계</b>	<b>2,880</b>	-			3급	5	5			4급	19	18	1		5급 이하 소계	<b>2,843</b>	-			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<b>연구직 계</b>	<b>12</b>	-			연구사 소계	12	-			<b>교육전문직원 계</b>	<b>237</b>	-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4	23	11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<b>203</b>	-			<b>별정직 계</b>	<b>3</b>	-			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계</b>	<b>3,150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 계</b>	<b>2,898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3·4급</b>	<b>4</b>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9	18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<b>2,861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연구직 계</b>	<b>12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1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교육전문직원 계</b>	<b>236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4	23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<b>202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별정직 계</b>	<b>3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계</b>	<b>3,133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 계</b>	<b>2,880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9	18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<b>2,843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연구직 계</b>	<b>12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1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교육전문직원 계</b>	<b>237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4	23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<b>203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별정직 계</b>	<b>3</b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관계법령

#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5.12.23.] [법률 제13335호, 2015.6.22., 일부개정]

제29조의3(시·도의회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) ① 시·도의회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·도의회회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

### 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
### 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
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8.>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입법예고 결과 검토 의견

민원인	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			검 토 의 견
	관련조항	의견 내용 및 그 이유	찬반 여부	
곽은기	별표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정규칙상의 보임직급을 맞추기 위해 상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</li> <li>○ 현재 34급을 복수직급으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</li> <li>○ 오히려 중앙도서관장은 상위법령에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매우 부당함</li> <li>○ 6급, 7급 등 하위직급의 승진적체가 심각하여 집단적 사기저하와 근로의욕 상실의 원인이 되므로 하위직 정원을 시급히 확대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함</li> <li>○ 타 시, 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평균 이상으로 상향하는 노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됨</li> </ul>	“반대”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“미반영”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임직급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(정원책정승인),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(정원 승인 신청 서류)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과 교육전문직원 중 본청의 과장담당관 이상, 교육지원청의 국장 이상, 직속기관의 부서장(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)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원 책정의 적정성,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정원을 기구정원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li>*'13.2.22.자 시·도교육청 조직정원 담당자 회의 시 승인받은 직위에 대하여 기구·정원 자치법규 개정 지시: '13.7.1.자 기구규칙 개정 완료 후 미개정 상태인 정원조례를 금번 개정하려는 것임</li> <li>○ 중앙도서관장 사서직 보임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(별표1)에 따라 행정, 세무, 전산, 교육행정, 사회복지, 사서, 숙기, 방호 등 행정직군의 3급은 직렬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</li> </ul> </li> <li>○ 정원책정기준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교육청의 실제 직급별 책정 정원은 높은 편으로 비율 상향을 통한 직급별 정원 책정은 총액인건비 부담 증가를 초래해 교육환경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</li> </ul> </li> </ul>

민원인	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			검 토 의 견
	관련조항	의견 내용 및 그 이유	찬반 여부	
이준	제2조	○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감축되는데 교육국 업무가 행정국으로 이관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나 운전직 같은 경우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공무원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	“반대”	<p>“미반영”</p> <p>○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(총액인건비제 운영)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시 학생수 감소분을 반영·교부하고 있어 매년 총액인건비 재정 현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어,</li> <li>- 본청기구 슬림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3.1.자 본청 조직개편 시 발생하는 인력을 감원하는 것으로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</li> </ul>